

의안번호	2206777
의 퇴 인	임미애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3.
추 계 번호	24B6112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두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억 2,000만원(연평균 2억 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(안 제15조의2 신설)	204	204	204	204	204	1,020	204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2 신설 (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)	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<u>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 1.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.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·개선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.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.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5.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에 관한 사항 6. 제15조제5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<u>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</u>하며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됨(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5조의2 신설 (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)	○	•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요

-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제8조¹⁾ 및 「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」²⁾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음

1)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(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)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.

1.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2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
3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2) 「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」(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9호, 2023. 12. 29., 일부개정)

- (위원회 구성일) 2013. 4. 30
 - (위원장) 2명
 - (위원 수) 총 20명
 - (공무원) 총 5명 (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유통소비정책관,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,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, 통계청 사회통계국장)
 - (민간위원) 총 15명
 - * (직 중) 생산자대표 등 15명
(공공기관 1, 농협 1, 생산자단체 6, 소비자·유통업체 대표 4, 학계 3)
 - (회의개최 횟수) ('22년) 2회, ('23년) 3회, ('24년 9월) 3회
- ※ [참고자료]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현황 참고

나.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(안 제15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,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, 회의 운영경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가정
 - 민간위원 수는 현행과 같이 15명으로 가정

[표 2]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등 가정

위원수 및 세부 내역		현행	개정안
민간위원 수		15명	15명
연간 회의개최횟수		4회	24회
1인당 1회 회의참석 사례금		30만원 ³⁾	30만원
위원회 운영비		1회당 3백만원	1회당 3백만원
사업경비	검증용역 (품목별 기준가격 설정 등)	매년 5백만원	매년 5백만원
	적정성평가 등 (위기단계 가이드라인 주기적 평가)	3년당 20백만원 (‘25년 최초 실시 예정)	3년당 20백만원
	예비비	1회당 1.5백만원 (운영비의 50%)	1회당 1.5백만원 (운영비의 50%)
속기록 작성비		—	1회당 1백만원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3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내로

-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개정안에 따른 운영경비에서 현행 운영예산(기준선)을 차감하여 추계함

$$\text{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} = \text{개정안에 따른 운영경비} - \text{현행 운영예산(기준선)}$$

□ 추계결과,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두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억 2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내용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개정안	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	민간위원 수(A, 명)	15	15	15	15	15	—
		1인당 사례금 (B, 백만원/명)	0.3	0.3	0.3	0.3	0.3	—
		연간 회의개최횟수(C, 회)	24	24	24	24	24	—
		소계(D=A×B×C, 백만원)	108	108	108	108	108	540
	위원회 운영비	속기록 작성비 (E=C×1백만원)	24	24	24	24	24	120
		회의 운영경비 (F=C×3백만원)	72	72	72	72	72	360
		사업경비 (백만원)	검증용역(G1)		5	5	5	25
			적정성평가(G2)		—	—	—	20
			예비비 등(G3=F×50%)		36	36	36	180
		소계(G=G1+G2+G3)		41	41	61	41	225
	소계(H=D+E+F+G)		245	245	265	245	245	1,245
현행 (기준선)	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	민간위원 수(A, 명)	15	15	15	15	15	—
		1인당 사례금 (B, 백만원/명)	0.3	0.3	0.3	0.3	0.3	—
		연간 회의개최횟수(I, 회)	4	4	4	4	4	—
		소계(J=A×B×I, 백만원)	18	18	18	18	18	90
	위원회 운영비	회의 운영경비 (K=I×3백만원)	12	12	12	12	12	60
		사업경비 (백만원)	검증용역(L1)		5	5	5	25
			적정성평가(L2)		—	—	—	20
			예비비 등(L3=K×50%)		6	6	6	30
		소계(L=L1+L2+L3)		11	11	31	11	75
	소계(M=J+K+L)		41	41	61	41	41	225
	추가재정소요(N=H-M)		204	204	204	204	204	1,02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편성(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, 2024. 5., 218쪽)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]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□ 설치 현황

① 명칭		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		
② 소속 및 성격		소 속	주 관	성 격
		농림축산식품부	농림축산식품부	행정위원회() 단순자문(✓) 심의() 의결()
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(입법형식)		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09호('23.12.29), 농안법 시행규칙('13.5.22) 정부입법(✓), 의원입법()		
④ 위원회 구성일		2013. 4. 30		
⑤ 존속기한 및 근거		미설정		
⑥ 설치목적		농산물의 수급상황, 수급안정 대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		
⑦ 기 능		·품목별 수급상황 조사·분석 및 판단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개선, 대응방안 수립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 등		
⑧ 위 원 (총 20명)	위원장 (임명권자)	김관수 교수(서울대학교) * 당연직(), 위촉직(✓) 박수진 식량정책실장(농림축산식품부) * 당연직(✓), 위촉직()		
	공무원 (총 5명)	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유통소비정책관,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 관,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, 통계청 사회통계국장		
	민간위원 (총 15명)	(직 중) 생산자대표 등 15명(공공기관 1, 농협 1, 생산자단체 6, 소비자·유통 업체 대표 4, 학계 3)		
	기타	(별도구분) 여성 3명(15%), 비수도권 11명(55%)		
	직무윤리규정	(공무원의제) 미대상 (해촉기준) 미대상		
⑨ 회의 개최실적* ('24.1~ '24.12)	본회의	출석 3회 * 서면 0회		
	개최장소	수도권(서울) 3회, 비수도권 0회		
	분과회의	분과위원회명 : 없음		
⑩ 예 산		'24년: 52백만원		

□ 활동내역서

1. '24년 9월말 기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상세내역

－ 총 3회(본회의 : 출석 3회, 서면 없음)

* 분기별 개최(12월 예정)

2.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

(단위 : 개최횟수)

구 분	총계	본회의			분과위원회		
		합 계	출석회의	서면회의	합 계	출석회의	서면회의
2022년	2	2	2	0	0	0	0
2023년	3	3	3	0	0	0	0
2024년	3	3	3	0	0	0	0
총계	8	8	8	0	0	0	0

3.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편성액				집행액			
	합 계	회의경비	사무국경비	사업경비	합 계	회의경비	사무국경비	사업경비
2022년	49,000	49,000	－	－	14,000	12,000	－	2,000
2023년	54,000	54,000	－	－	42,000	21,000	－	21,000
2024년	52,000	52,000	－	－	22,000	22,000	－	－

* (‘22) 사업경비 : 수급조절매뉴얼 보완용역, 용역 평가비 등(21,000천원)

* (‘23)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을 위한 용역비(74,500천원)는 별도 예산(유통개선 연구용역비)으로 집행

* (‘24) 집행액은 현재 기준(9월)으로, 12월까지 집행액은 변동 가능